

4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(안)은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, 제6조, 제9조에 의거 본 조례안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와 사용료의 정수 규정을 두었고
 -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확보도록 하였으며
 - 생활체육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한 위탁관리 규정을 두었으며
 - 또한 필요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본 조례(안)은
 - 그동안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적정한 기준 없이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많은 이바지를 할 것이며
 - 또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조례제정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,

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4. 3. 2.

보고자 : 박창수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《검토보고서》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04. 2. 13.
-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2. 개정사유

-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체계를 바꾸기 위하여 시행하는 「승용차 자율요일제」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
- 주한외교관이 외교활동 시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며
-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(800cc 미만)의 주차요금을 급지에 관계없이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 개정내용은

-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(노상, 노외) 중 2·3·4·5급지 주차요금의 20%를 할인(신설)
- 주한 외교관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(신설)
-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급지와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(2·3·4·5급지→급지와 관계없이로 변경)

4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고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거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
-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동차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, 면제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,

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4. 3. 2.
보고자 : 박창수